



대구대학교와 (주)DUDC는 대구대학교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(목적) 본 협약은 대구대학교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클라우드, 메타버스, 인공지능 등 미래 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과 우수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내용)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지원 협력하고,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.

1. 대구대학교 데이터센터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
2. 데이터센터 유치 확정 시 부지 제공(부지매각 등)
3.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인력양성 및 교육,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
4. 데이터센터 건립 시 탄소중립 정책 적극 반영

제 3조(협약기간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여 제 5조에 의거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효력은 지속된다.

제 4조(협약의 변경 및 해석)

- ①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5조(협약의 해제 및 해지)

- ①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1. 협약당사자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 2. 협약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
 3. 부지 선정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

② 제 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 6조(비밀유지)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의거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

제 7조(법적 구속력) 본 협약은 제 6조(비밀유지)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아니한다.

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, 협약당사자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28일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박승진 (인)



DUDC

대표이사 김광훈 (인)

